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3121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9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8월 25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26일
3. 상정일자 :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
(2025년 9월 9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조재익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5. 8. 14. 시행)으로 AIDT(디지털교과서)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에도 교육자료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 이용을 승인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존 AIDT 예산은‘(정책사업) 교육복지’에 편성하였으나,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 이용 필요

※ (정책사업) 교육복지 ⇒ 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

나. 예산 이용을 통해 2025. 2학기에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지원

< 이용 내역 >

(단위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구분	예산액 (A)	이용증감 (B)	소계 (C=A+B)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			
교육복지	교육복지지원	교과서지원	운영비 (210)	감	101,176,353	△1,914,282	99,262,071
교수학습 활동지원	학교정보화	ICT활용 교육지원	학교회계전출금 (620)	증	11,939,000	1,914,282	13,853,282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승인안은 2028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121호로 제출되어 2028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승인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5.8.14.시행)으로 AIDT(이하 ‘AI 디지털교과서’)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AIDT 예산을 ‘(정책사업) 교육복지’에서 ‘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’으로 이용하여 AIDT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 이용을 승인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■ ‘AI 디지털교과서’, ‘교육자료’로 변경

- 교육부는 2023년 10월 24일에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([시행 2023.10.24.][대통령령 제33829호, 2023.10.24., 일부개정])」의 정의, 검정 절차 등을 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.

- 이후 교육부는 「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(안)」¹⁾등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준비해 왔으며,

2024년 11월 29일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합격 결정을 공고하여 2025년부터 일부 교과(수학·영어·정보)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.

-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‘교과서’가 아닌 ‘교육자료’로 정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가결 되었고,²⁾ 이에 교육부는 2025년 1월 22일 동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, 최종적으로는 2025년 4월 17일에 동 법률안이 부결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시 ‘교과서’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
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따라 ‘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’ 편성 시 초등학교 3·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‘교과서지원’ 세부사업으로 총 185억 3백만원(운영비) 편성하였습니다.

- 그러나 이후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‘교육자료’로 활용되는

1) 교육부(2024.5.).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(안).

2) [2206630]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, 본회의 원안가결(2024.12.26.).

법안이 발의되자 AI 디지털교과서를 초등학교 3·4학년 전체 대상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³⁾,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예산을 △77억 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.

- 그리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30억 1천 4백만원, 중학교 20억 6천 3백만원, 총 50억 7천 7백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고, 계약 형태는 교과별로 연간 또는 학기 단위로 학교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.
- 그러나 이후 2025년 8월 4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⁴⁾이 다시 개정되면서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최종 변경되게 되었습니다.

■ ‘예산의 이용’에 대한 타당성

- ‘예산의 이용’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‘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’에 의해 각 정책사업⁵⁾간에 이용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나, 예외적으로 “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”을 거쳤을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(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⁶⁾).
- 이때 “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”의 의미는 예산총칙을 통해 미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거나⁷⁾, 지방자치단

3) 교육부(2025.3.21.). 2025학년도 검·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선택 관련 수정 안내.

4) [2211647]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, 본회의 수정가결(2025. 8.04.)

5)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·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.

6)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
② 생략

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·금액·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별도의 안건⁸⁾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⁹⁾.

- 따라서 동 승인안은 202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‘AI 디지털교과서’의 교육자료로서의 지위 변화에 따라

2025년도 2학기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긴급성이 인정되며, 현재 예산 및 예산총칙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육자료로서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예산을 ‘예산의 이용’을 통해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, 동 승인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1] 예산의 이용 현황

(정책사업) 교육복지	(단위사업) 교육복지 지원	(세부사업) 교과서지원
↓	↓	↓
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	(단위사업) 학교정보화	(세부사업) ICT활용교육지원

7)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,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,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, ‘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’, 행정안전부, 2024.7. 159쪽 참조.

「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」 예산총칙

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「지방재정법」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공무원의 보수
2. 기간제 근로자,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
3. 세금, 공과금, 배상금, 증인·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
4. 재해대책비
5. 반환금
6. 학교신설비

8) ‘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’, 행정자치부, 한국지방재정공제회, 2015.12. 281쪽

9) 행정안전부(2024.7.). ‘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’. 395쪽 참조

■ 이용 규모의 적정성

-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이용 승인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‘학기’로 계약한 학교는 제외하고 ‘연간’으로 계약한 학교 예산에 한해서만 2학기 예산(19억 1천 4백만원)을 이용하는 것으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.

[표-2] ‘AI 디지털교과서’ 예산 편성 현황 (초·중학교)¹⁰⁾

(단위: 천원)

예산구분	학교급	설립구분	본예산 (a)	제1회 추경 감액	예산 현액	AIDT 계약금액			이용 신청액	제2회 추경 감액 요청액 (예정)
						연간	학기	전체		
운영비	초	공립	18,503,438	△7,739,781	10,763,657	1,671,409	1,130,949	2,802,358	1,914,282	△3,772,392
		사립				94,256	117,471	211,727		
	중	공립				1,426,183	-	1,426,183		
		사립				636,715	-	636,715		
	총합계		18,503,438	△7,739,781	10,763,657	3,828,563	1,248,420	5,076,983	1,914,282	△3,772,392

- 이와 같은 이용 규모는 연간 단위로 종전 디지털 교과서를 계약한 학교와 업체 간의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다만 개별 학교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, 학기별로 계약한 학교에서도 2학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수요 신청시 학기 단위로 계약한 과목에 대해서는 2학기 신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.

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예산을 이용한 이후 제2회 추가경

10)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요구자료(1934번), 서울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-14300(2025.9.3.).

정예산안(예정)에서 △37억 7천 2백만원을 추가로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, 현재 동 사업의 예산은 계약 방식에 관계 없이 1학기때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교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예산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.

-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단위 계약한 학교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2학기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Ⅳ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Ⅶ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

의안 번호	312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년 8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5. 8. 14. 시행)으로 AIDT(디지털교과서)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에도 교육자료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 이용을 승인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기존 AIDT 예산은 ‘(정책사업) 교육복지’에 편성하였으나,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 이용 필요
 - ※ (정책사업) 교육복지 ⇒ 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
- 예산 이용을 통해 2025. 2학기에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지원

< 이용 내역 >

(단위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구분	예산액 (A)	이용증감 (B)	소계 (C=A+B)
정책 사업	단위 사업	세부 사업	편성목				
교육복지	교육복지 지원	교과서지원	운영비 (210)	감	101,176,353	△1,914,282	99,262,071
교수학습 활동지원	학교정보화	ICT활용 교육지원	학교회계전출금 (620)	증	11,939,000	1,914,282	13,853,282

3. 참고사항 :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9조, 제29조의2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용[안]

□ 배경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2025. 8. 14. 시행)으로 AI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
- 기존 AIDT 예산은 ‘(정책사업) 교육복지’에 편성되었으나,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이용 필요
※ (정책사업) 교육복지 ⇒ (정책사업) 교수학습활동지원

❖ 예산의 이용: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

□ 법적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의2(예산의 이용·이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
-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□ 이용 내역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구분	예산액 (A)	이용증감 (B)	소계 (C=A+B)	비고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				
교육복지	교육복지지원	교과서지원	운영비 (210)	감	101,176,353	△1,914,282	99,262,071	
교수학습활동지원	학교정보화	ICT활용교육지원	학교회계전출금 (620)	증	11,939,000	1,914,282	13,853,282	공립 1,548,796천원 사립 365,486천원

- * 2025학년도 AIDT(교과서) 선정 학교 중 연간 단위 계약금액 총액에 대하여 2학기 사용분(총 계약금액의 50%)에 해당하는 예산(1,914,282천원)을 이용 신청